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89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임호선 · 권철승 · 전용기
서삼석 · 송재봉 · 조계원
정준호 · 장종태 · 김주영
전종덕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물중독 상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으며, 이들에 대한 음주 또는 약물중독 측정 검사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제12조제3항 후단 중 “말한다”를 “말하며, 약물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유선을 조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말한다”를 “말하며, 약물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유선을 조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관계공무원은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2조제5항제2호를”을 “제12조제6항제2호를”로 한다.

4의2.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정을 거부한 자 제41조제2호 중 “제12조제5항제1호”를 “제12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5항제10호”를 “제12조제6항제10호”로, “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 ----- ----- ----- ----- ----- ----- ----- -----.
1. ~ 7의2. (생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3.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u>
	<u>제4항을 위반하여 측정을 거</u>
	<u>부한 경우</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
항 의무) ①·② (생략)	항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③ -----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	-----
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	-----
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	-----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
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신 설>

④·⑤ (생 략)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
항 의무) ①·② (생 략)
③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

-----.

-----말하며,
약물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
약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2
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
로 유선을 조종할 수 없는 상
태를 말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음주, 약물, 환각
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
항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신 설>

④ (생략)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

-----말하며,
약물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유선을 조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약물, 화학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0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제12조제5항제2호</u>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 9. (생 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u>제12조제5항제1호</u>·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u>제12조제5항제10호</u>, 제15조제2	<u>4의2.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정을 거부한 자</u> 5. <u>제12조제6항제2호</u>를----- ----- ----- 6. ~ 9.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2조제6항제1호</u>----- ----- ----- ----- ----- ----- ----- 3.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 ----- -----. 1. ----- <u>제12조제6항제10호</u>-----
---	---

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 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3. (생략) ② (생략)	-----제16조제5항----- ----- ----- ----- ----- -----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